

<b>의안 번호</b>	1741	<b>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</b>
------------------	------	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5. 3.(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5. 3.(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5. 13.(목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주민자치국장 이상찬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반영.

### 나. 주요내용

-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(안 제12조)
  - 구 성 : 의장, 부의장 포함 7명 이상 ~ 15명 이내(안 제14조 )
    -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체육회의 회장 포함 명시
  - 회의 등 운영 (안 제15조 ~ 제20조)
    - 위원 임기 2년, 정기회의 연1회 개최 등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및 불필요한 규정 정비
  - 생활체육교실 강사규정 및 준용규정 삭제 (안 제8조, 제11조)

### 다. 근거법규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

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미경)

- 상위법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의무화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정 삭제로 조례의 적법성을 유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로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근거법규

## 국민체육진흥법

제5조(지역체육진흥협의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